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정·주의 요 구

제 목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 등 계약방법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구

내 용

1.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분류하여 발주 등 계약방법 부적정

울산광역시 ○구(○○과, ○○○○단)에서는 울산광역시 ○구 ○○동 소재 ○○○○시장 하부 비막이 설치를 위해 「○○○○시장 아케이드 하부 비막이 설치공사(건축)」를 종합공사¹⁾으로 입찰 공고하여 2017. 10. 26. (주)○○○○건설(대표 ○○○)과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.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며,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

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대공사의 범위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로 되어 있다.

1)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7조에 의한 「건축공사업」 또는 「토목건축공사업」

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 전 기초금액 산출서의 공정 내역을 확인하여 계약법령 등에 따라 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으로 분류하여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.

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‘○○○○시장 아케이드 하부비막이 설치공사’의 경우 전체공정 중 99%가 금속·창호공사이며, 이외 약 1%는 철거공 등 부대공정으로 구성된 전문 공사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을 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했음에도 종합공사로 발주·계약이 체결되었고,

전문공사로 발주 할 경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었음에도, 결국 종합공사업을 하는 계약상대자는 전체 도급금액의 45%이상을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채²⁾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.

그리고 하도급 공정(금액)을 살펴본 바, 부대공 및 사급자재대를 제외한 주 공정 전체를 하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공사 품질 저하 및 해당 계약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문공사 업체에 입찰 참가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2. 설계변경 시 이윤 과다 계상 부적정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

2)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도급금액 3억원미만의 경우 100분의 50을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4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,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윤 등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조달청 제비율에 따라 노무비+경비+일반관리비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했음에도 4,093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

[시정] 과다 지급된 4,903천원을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앞으로 해당 계약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